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1드단○○○○○○(본소) 이혼등
2011드단○○○○○○(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 (76년생 남자)
주소 ○○시 ○○읍 ○○리 ○○○ ○○○○○○아파트 ○○○-○○○
○○○
등록기준지 진주시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피고(반소원고) ○○○ (77년생 여자)
주소 부산 ○구 ○○동 ○○○-○○
등록기준지 경남 ○○군 ○○면 ○○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사 건 본 인 ○○○ (2008년생 여자)
주소 부산 ○구 ○○동 ○○○-○○
등록기준지 대구 ○○구 ○○동 ○○○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31.

주 문

1. 반소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0.부터 2012. 10.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청구, 본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 가.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등록절차를 이행하고,
 - 나. 1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2. 11. 1.부터 2021. 2. 28.까지 월 7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24. 2. 29.까지 월 8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28. 11. 18.까지 월 9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원고(반소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가. 매월 4째 주 토요일 14:00부터 그 다음날(일요일) 18:00시까지.

- 나. 사건본인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생활 중 여름방학 동안 5박 6일간, 겨울방학 동안 5박 6일간. 단, 면접교섭 시작 시각은 첫날 14:00이고, 종료 시각은 마지막 날 18:00이다.
- 다. 설(음력) 연휴 중 1박 2일간, 추석 연휴 중 1박 2일간. 단, 구체적인 면접교섭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 라. 위 나.항 및 다.항의 면접교섭은 위 가.항의 면접교섭과 별개이고, 사건본인의 동의 아래에 면접교섭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다.
- 마. 위 가.항, 나.항 및 다.항의 면접교섭 시작 시각에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 종료 시각에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을 피고(반소원고)에게 데려다 준다.
- 바.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의 생일과 어린이날에 당일로 하여 사건본인을 찾아와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사. 원고(반소피고)는 언제든지 사건본인에게 전화, 편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할 수 있다.
- 아. 사건본인의 학업과 관련한 활동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협의하여 면접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 자.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또는 사건본인의 거주지가 현재와 다르게 변동됨으로 인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방법 등에 대해 새롭게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그에 대해 새롭게 정하기로 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분의 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항과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5항.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제5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 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중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120만 원,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1, 13, 14, 16, 19, 2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내지 18,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 5. 결혼식을 올리고 2008. 2. 2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에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대구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대구집'이라고 한다)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결혼식 무렵 ○○○○○○ 주식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사무실로 통근하고 있었다. 원고는 업무상 ○○, 일본 등 해외 출장이 잦았다.

다. 결혼 전에 ○○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피고는 2008. 3. 1. 다시 ○○ ○○중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피고는 주중에는 친정이 있는 부산에서 ○○ ○○중학교로 출근을 하며 지내고, 주말에 대구집으로 가면서, 원고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다. 이 무렵 피고는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0. 31. 기간만료로 ○○○교사를 그만두었고, 2008. 11. 19. 대구에서 사건본인을 낳았다. 그리고 대구집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다.

마. 사건본인이 백일이 지나자 자주 아프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치료를 위해 부산의 병원과 친정을 오갔다. 원고의 잦은 해외 출장은 이 무렵에도 계속되었다. 그럴 때면 피고는 대구집에서 사건본인과 둘이서 지내곤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2.경 직장에서 회사의 ○○법인 주재원 근무를 제안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와 충분히 의논하지 않았고, 그 제안에 대한 수락여

부 마감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을 때에 이르러서야 이를 피고에게 전화로 말하였다. 피고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건강 등을 이유로 ○○에서 근무하는 것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문제로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그러다 결국 원고는 ○○ 근무를 결심하였다.

사. 원고의 ○○ 근무가 결정되자, 이어서 ○○ 근무 교육을 받기 위하여 ○○사무실로 파견을 가야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 근무기간이 얼마나 될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일단 원고가 ○○에 원룸을 구하여 혼자 지내며 ○○사무실에 근무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피고는 대구집과 부산 친정을 오가며 사건본인과 지냈다.

아. 원고는 2010. 6.경 ○○사무실로 다시 파견을 왔고, 그때부터 2010. 9.경까지 대구집에서 피고, 사건본인과 같이 살았다.

자. 피고는 2010. 9. 1.부터 ○○ ○○중학교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사건본인과 함께 부산 친정으로 내려왔으며, 주말에는 대구집으로 가는 생활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10. 10.경 ○○ 근무를 포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사무실에 자리가 있어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와 상의 없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심하여 ○○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투었다.

카. 어느덧 피고도 원고와 함께 ○○로 이사하기로 하고, ○○에서 지낼 집을 찾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는, 먼저 인터넷으로 알아본 다음, 날을 잡아 함께 집을 보러 다니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부모님과 함께 집을 결정하여 가계약을 하였고, 가계약한 사실도 그 뒤 피고가 원고에게 집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피고와 통화하는 과정에 피고에게 말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다.

타. 사건본인이 2010. 10. 말경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때 병원에 원고와 원고 부모, 피고와 피고 부모가 모두 모였다. 이전에 피고가 이혼을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그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그런데 이때가 원고가 사건본인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파. 원고는 2010. 10. 17. '파주시 ○○읍 ○○리 ○○○ ○○○○ ○○아파트 ○○○동 ○○○호'(이하 '파주집'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4. 주민등록도 옮겼다. 또한 원고는 파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집을 전세로 내놓았고, 2010. 10. 31. 대구집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대구집을 2011. 1. 5.까지 세입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 원고와 피고는 2011. 1.경 파주집으로 짐을 옮기며 이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사짐을 마련하고 부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다투게 되었다. 이사가 끝나고서, 원고는 먼저 파주집으로 들어갔다. 피고는 2011. 1. 4. 파주집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는 서운한 감정을 느꼈던 데다가, 부산에 있는 사건본인으로부터 감기로 우는 전화를 받고서, 다시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원고와 또다시 다투게 되었다. 그래서 이혼이야기가 나왔고, 원고와 피고는 2011. 1.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 ○○○은 합의이혼함을 협의합니다.

단, ○○(딸)은 ○○○이 데리고 가고(양육권·친권), ○○○은 ○○○에게 3천만원 지급함.

3천만원 이외 별도 양육비는 일체 지급하지 않음을 협의함.

단, 아이의 병원비라든지 추가 비용은 공동으로 지불한다.

아이의 면접권 또한 이행하여야 한다.

거. 하.의 각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건본인은 피고가 키우고 있다.

너. 피고는 2011. 1. 8. 사건본인을 데리고 원고를 만나러 파주집으로 갔다. 파주집 비밀번호를 모르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며 문밖에서 기다렸는데, 원고는 3~4시간 뒤 피고가 내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문자만 보냈다. 이에 피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더. 피고는 2011. 설날에 사건본인을 데리고 ○○ 시택에 찾아갔는데, 원고 아버지로 부터 더 이상 며느리 안하는 걸로 한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또한 피고는 그날 원고에게도 연락했는데, 정체를 운전 중이던 원고는 피고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다.

러. 원고는 별거 이후 피고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하.의 3,000만 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한동안 피고와 연락하지 않았다. 또한 2011. 1.경 이후부터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 통장, 각종 보험, 피고가 사용하던 신용카드 등을 모두 해지하거나 중단하였다.

머. 한편, 원고는 격무와 피로 등으로 사건본인과 제대로 놀아주지는 못하였고, 피고가 피고 어머니와 함께 사건본인을 키웠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아플 때에도 피고와 피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간호하였다. 별거 이후에도 사건본인은 많이 아팠으나, 원고는 사건본인을 보러 오지 않았다.

2. 본소 이혼 청구와 반소 이혼 청구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잦은 해외 출장과 직장에서의 격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임신과 출산에, 육아를 도맡았

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부부로 가사까지 책임짐으로써 생활이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둘 다 모두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듬어주고 다독여주었더라면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12호증의 기재 외에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동거 거부로 별거생활이 잦아졌다거나, 피고가 원고와 원고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부부 사이에 상의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여러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피고와의 갈등을 생산, 증폭시켰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원고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를 비롯한 가정 일에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은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다. 이렇게 원고가 초래한 갈등과 긴장은 계속 누적되다가, 과주집으로 이사를 할 무렵에 이르러 이혼 합의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반면에, 피고로서는 제1항의 하.의 각서를 작성한 직후 원고나 원고 부모를 찾아가는 등, 미흡하나마, 관계회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노력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그 혼인관계 파탄 시점은 2011. 1.경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혼 사유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소 위자료 청구와 반소 위자료 청구 판단

가. 반소 위자료 청구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피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 9. 20.부터 이 판결선고인 2012. 10. 3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5,000만 원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본소 위자료 청구

원고는, 동거 거부로 인한 잦은 별거생활, 원고와 시부모에 대한 냉대와 무관심 등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반소 재산분할 청구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는 혼인 전인 2007. 12. 10. 대구집을 1억 3,20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12. 28.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원고가 마련하였고, 나머지 9,200만 원은 원고 부모가 지원하여 주었다.

(2) 피고는 결혼 당시 예단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왔고, 그 외에 혼수를 해서 왔다.

(3)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하기 전을 기준으로 급료 총액은 2008년도가 42,762,853원(월 평균 약 356만 원에 해당한다), 2009년도가 52,541,798원(월 평균 약 437만 원에 해당한다), 2010년도가 56,007,639원(월 평균 약 466만 원에 해당한다)이고, 2011년도는 113,269,591원(월 평균 약 943만 원에 해당한다)이다. 한편, 원고의 2011. 말경을 기준으로 한 예상퇴직금 액수는 38,866,037원이다.

(4) 피고는 2008. 3. 1.부터 2008. 10. 31.까지 및 2010. 9. 1.부터 2010. 12. 29.까지 ○○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약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피고는 육아와 가사를 도맡았다.

(5) 혼인생활 동안 원고의 월급은 피고가 관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 용돈, 잡비 등을 타서 썼는데, 그 액수가 89만 원 내지 90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6)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러○○○○ ○○○ 승용차를 이전받아 소유권

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1. 1.경을 기준으로 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1) 원고의 적극재산

○대구집 : 1억 3,500만 원.

○○○집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8,700만 원.

○○○은행 계좌 잔고 : 1,739,717원.

○○○생명보험 無○○슈퍼정기보 해지환급금 : 2,394,265원.

○○○은행 계좌 잔고 : 1,000만 원. 이 예금액의 계좌 번호, 잔고의 기준 시기 등에 관하여 기록상 객관적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예금으로 보여지므로, 가사조사 당시 원고가 인정한 바에 따라 적극재산에 포함한다.

○○○거○○○○ ○○ 승용차 : 634만 원.

○○○러○○○○ ○○○ 승용차 : 110만 원.

○○○머○○○○ ○○○ 승용차 : 혼인 파탄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은행(정기적금) : 이 적금의 계좌 번호가 특정되지 않았고, 적금의 납입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여 적금의 액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연금보험 : 이것의 계좌 번호가 특정되지 않았고, 어떤 형태의 금융인지 불분명하므로,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소극재산

○대구집 임차보증금반환채무 : 9,000만 원.

○원고 부모에 대한 채무 : 8,250만 원. 대구집을 구입하기 위해 원고 부모가 원고에게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었는바, 그 금액이 고액인 점, 혼인생활 중 950만 원을 원고 부모에게 갚은 점, 위 950만 원 외에도 계속하여 일정한 액수의 돈을 모아서 장래를 대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점, 원고 부모가 원고에게 위 950만 원 외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9,200만 원은 원고 부모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9,200만 원에서 위 950만 원을 공제한 8,250만 원을 소극재산에 포함한다.

(3) 피고의 적극재산

○○○은행 계좌잔고 : 100만 원. 이 예금액의 계좌 번호, 잔고의 기준 시기 등에 관하여 기록상 객관적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예금으로 보여지므로, 가사조사 당시 피고가 인정한 바에 따라 적극재산에 포함한다.

○○○은행 계좌잔고 : 300만 원.

○○○○화재해상보험 해지환급금 : 320,531원.

(4) 피고의 소극재산

○없다.

(5)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원고의 순재산 : 71,073,982원

○피고의 순재산 : 4,320,531원

○원고와 피고 순재산의 합계 : 75,394,51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8 내지 20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

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의 ○○연금공단,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생명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70%, 피고 30%

【판단근거】 위 가.항의 인정사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수준, 혼인기간, 기타 제반사정, 특히 부부 공동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구집은 혼인 전에 원고 돈 4,000만 원과 원고 부모 돈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것인데, 혼인 후 원고 부모에게 일정액을 갚은 점, 대구집의 가치가 원고 부모에 대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국한되게 된 점, 원고의 예상 퇴직금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인 점 등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우선,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되, 원고가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지급하게 할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계산함.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러○○○○ ○○○ 승용차를 이전하고, 그 가액을, 피고가 지급받을 것으로 계산한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판단근거】 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 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 계산결과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75,394,513원 ×

70% = 52,776,159원(원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순재산에서 위 피고의 몫을 빼면 71,073,982원 - 52,776,159원 = 18,297,823원이다.

○일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18,297,823원을 약간 웃도는 1,830만 원으로 계산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돈 중 110만 원은 ○○러○○○○ ○○○ 승용차의 이전으로써 갈음하고, 위 돈에서 110만 원을 공제하면 1,720만 원이 된다.

라.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러○○○○ ○○○ 승용차(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1,7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의사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6. 반소 양육비 청구 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피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 정도,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혼인 파탄 이후 이 판결선고일까지 양육비 액수를 월 60만 원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원

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120만 원(=60만 원 × 22개월 - 제1항의 하.의 각서 작성 후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대금 약 200만 원 상당)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2021. 2. 28.까지 월 7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2024. 2. 29.까지 월 8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8. 11. 18.까지 월 9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7.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7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판사 이준영 _____